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삼서건설(주)		
	주 소	우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107호(가락동,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전화번호	02-2292-2494	팩스번호	02-6160-7691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85호
- 명 칭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
-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 두께 이상 5cm~15cm 깊이 범위에서 현장 조건에 맞추어 원형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외경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 신기술의 범위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인상하여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용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3.14~2030.03.1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